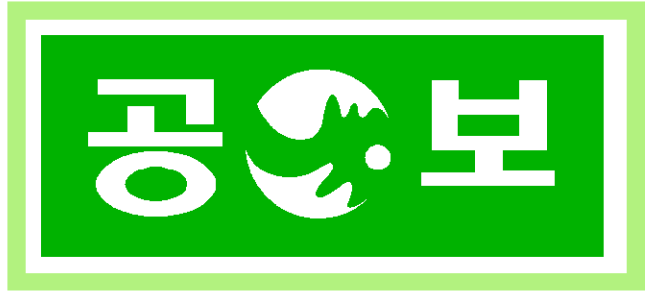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관	기 관 의 장



제 789 호 2012. 12. 10(월)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6호[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79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80호[도로명주소 고시] 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18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927호[공시송달 공고] 12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에 따라 난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1호 승용차량 기준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정수	차 형 별		경·소형 및 다목적차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구 분 청	32대	1대 (구청장전용)	2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29대
보 건 소	2대			2대
구 의 회	2대	1대 (의전용)		1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1. 표시대상: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단속 등 특수업무의 수행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 표시내용



울 산 광 역 시 북 구

<http://www.bukgu.ulsan.kr>

3. 표시의 위치 및 크기

- 기존차량에 부착된 ‘공무수행’ 표시는 차량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 표시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함
 - 승합차량은 누구나 구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 부분에 표시함
 - 표시크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위치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4. 부착방법: 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관용차량 운영과정상의 예산 낭비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년 업무량 증가, 관할 구역의 특수성,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승용차의 정수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용차량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마련 (**제17조 제4항, 별표 4**)
- 나. 관용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구 홈페이지 내 공개 (**제23조의 2**)
- 다. 승용차 기준정수를 종전의 **29대**에서 7대가 증가된 **36대** 정수 조정 (본청 중 8대, 보건소 감 1대)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 그시 제 2012 1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한라상조(주) 대표 김성일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농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사업주체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11
 - 나. 성 명 : 한라상조(주) 대표 박영배
-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

□ 사업거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주·체	◦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박영배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67번지 일원	
대 지 면 적	◦ 5,005.0000㎡	
건 축 면 적	◦ 1,335.9182㎡	
연 단 적	◦ 16,536.2196㎡	
건 폐 율	◦ 26.69%	
용 적 륜	◦ 216.21%	
동 수(주/부)	◦ 3동 / 4동	
세 내 수	◦ 157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업·비	◦ 18,756,774 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2. 12 ~ 2014. 1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동법 제9조 『건축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53-1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인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505-3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753-1(영포동)	2012-12-10	영업항 개항지를 인건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곡동 1448-2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56(화북동)	2012-12-10	화북은 화북의 옛지명이며 산세가 겹겹이 늘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10-04-27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8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1(정자동)	2012 12 10	정자동역인 정자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04 08 09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76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5-2(명촌동)	2012-12-1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17-1	울산광역시 북구 삼강4길 15(연암동)	2012-12-10	삼강마을 영조때 삼강리라 불려 삼강마을의 유래가 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B 8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8(진장동)	2012 12 1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권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 12 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B 8-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8-1(진장동)	2012-12-1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권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B 7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8-2(진장동)	2012-12-1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권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2004-12-2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 18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상방2길 31의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주소명	주소명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2길 3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64-4		2012-12-10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2길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9-29외 14필지		2012-12-10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9길 5-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92-10		2012-12-10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93-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74-5		2012-12-10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2길 19-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51-6		2012-12-10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2 - 927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도연람”				

※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지적팀(☎ 052-241-7585,7586) 및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2012. 12. 31.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지적팀(☎052-241-7585,7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승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변경사유
1	김임연	821212-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8	2004-01-05	주출입구 변경
2	김주연	741109-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8	2004-01-05	주출입구 변경
3	손범문	830201-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8	2004-01-05	주출입구 변경
4	황상일	700520-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3길 7-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8	2004-01-05	주출입구 변경
5	김미혜	830622-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6-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7	2009-08-20	주출입구 변경
6	김지혜	850228-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6-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24-7	2009-08-20	주출입구 변경